

문서번호	건강정책과-7019
결재일자	2016.5.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건강증진담당	건강정책과장	보건소장	부구청장	구청장
박소정	김영복	정유섭	황원숙	代손정수	05/18 김영배
협 조	<p>교과이동장산초등학교관 민지선 여성가족과장 홍경선 건설관리과장 대리종열 마을민주주의과장 한재현 홍보전산과장 유인욱</p>				

- 간접흡연 없는 건강도시 성북을 위한 -
금연구역 확대지정 운영계획



성북구보건소
건강정책과

- 간접흡연 없는 건강도시 성북을 위한 -
금연구역 확대지정 운영계획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주변 10m를 금연구역으로 추가지정 운영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

I 추진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금연을 위한 조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관련법령 주요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⑤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2. 학교정화구역 3.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6.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II 추진계획

→ 금연구역 확대 지정계획

- 지정일 : 2016. 6. 1
- 고시공고일 : 2016. 5월 중
- 계도기간 : 2016. 6. 1 ~ 8. 31(3개월)
- 단속시작일 : 2016. 9. 1
- 지정대상 : 어린이집 321개소, 지역아동센터 27개소

('16.5월 현재)

합계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계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	
347	321	56	125	137	3	26

※ 성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6조에 의거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신설·변경 시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 및 해지됨

→ 금연구역 관리

- 금연구역 관리 및 단속반 운영
 - 금연지도원 운영 : 14명(2인 1조)
 - 금연단속원 단속 : 3명
-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시기 : 2016. 9. 1부터
 - 과태료 부과 금액 : 10만원

→ 금연구역 지정 홍보 및 계도

- 금연구역 지정 표지판 설치 및 현수막 게첨
- 홍보 및 캠페인 실시
 - 구보, 홈페이지, 뉴스레터, 성북소리 등 보도 자료 홍보
 - 공공근로자, 어르신 금연구역 안전지킴이를 통한 금연구역 홍보
 -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주변 10m 금연구역 지정 홍보 캠페인 실시
- 금연구역 계도 활동 실시
 - 어머니금연모니터단, 금연지도원, 금연단속원을 통한 금연구역 지정 홍보

III 소요예산

→ 소요예산 : 3,927천원

- 산출내역
 - 금연구역 지정안내 현수막 : 20개 × 77,000원 = 1,540,000원
 -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배부 표지판 : 350개 × 6,820원 = 2,387,000원

IV 금연구역 현황

→ 금연구역 현황 : 총 9,248개소

총계	국민건강증진법	서울시조례		성북구 조례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지하철역출입구10m	계	공원	하천	거리	버스정류소	학교절대정화구역	마을버스정류소
9,248	8,334	10	62	842	42	2	3	259	102	434

-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구역 : 8,334개소

계	의료기관	청사	유치원 초중고대	보육시설 (어린이집)	학원	어린이 놀이시설	사회복지 시설
		541	62	109	340	2	346
8,334개소	청소년 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 운동장	목욕장	음식점	게입 제공업소	체육시설 (1천명이상)
	6	33	207	46	4,930	154	2
	교통관련 시설	건축물 (1천㎡)	공연장 (300석이상)	대규모 점포	관광 숙박업소	만화 대여업소	
	874	69	4	16	4	5	

- 성북구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 842개소

총계	공원	하천	거리	가로변 버스정류소	학교절대정화구역 (출입문으로부터 50m)	마을버스정류소
842개소	37개소	2개소	3개소	259개소	102개소	434개소

- 서울시 조례 금연구역 : 72개소
 -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5개지점 양방향 10개소
 - 지하철역 출입구 10m 62개소

→ 성북구 조례 금연구역 지정 현황

지정년도	지정대상	개소수
2003	성북구 금연환경조성 조례 제정	
2011	간접흡연피해 방지 조례 제정	
2012.02.01	공원 31개소, 공공부지 1개소(길음역 어울림마당)	32개소
2012.10.01	성북천, 정릉천	2개소
2013.11.01	공원 5개소, 하나로 거리, 아마존거리	7개소
2014.04.01	가로변버스정류소 259개소 (10m이내)	259개소
2015.02.01	학교절대정화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m이내)	102개소
	길음뉴타운 8단지 앞 보도 일대(500m)	1개소
2015.06.01	마을버스정류소 (10m이내)	434개소
2015.08.01	공원 5개소, 길음뉴타운 길음로 2.5km	5개소

→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현황

장소	학교절대정화구역	마을버스정류소	길음뉴타운 거리
내용	모든 출입문 주변 보도에 표지판 135개설치	포맥스 표지판 530개 PVC 스티커 196개	길음뉴타운 양방향 바닥표지판 18개설치
사진자료			
장소	하나로거리·길음어울림마당·길음역 주변	성북천·정릉천 산책로	공원
내용	하나로거리 및 길음역 등 바닥표지판 8개 설치	성북천 산책로 5개 정릉천 산책로 9개	신규지정 공원 등 10개
사진자료			

V 행정사항

→ 금연구역 지정 홍보 ----- 홍보 전산과, 마을민주주의과

→ 현수막 및 표지판 설치 홍보 협조 ----- 건설관리과, 여성가족과,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붙임 금연구역확대지정 고시문(안) 1부. 끝.